

종 합 토 론

◎ 김광옥(수원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박현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 첨언하자면, 해당 기사삭제요구건은 기사가 잘못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언론사에서 인정을 베푼 것으로 기사삭제청구권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잊혀질 권리를 이유로 범죄의 시효가 지났다고 하여 이를 삭제해 달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쁜 일, 나쁜 역사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재해석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지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오래전에 주중국한국대사관 사이트에 중국인을 비하하는 댓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협의하여 나아가야 할 부분인데 이 과정이 단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우선 토론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전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몇 달 후에 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청구를 통해 추후보도가 이루어졌지만, 포털에서 현재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보면 예전의 1심 유죄판결 결과가 여전히 검색되어 언론중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제척기간이 지나 도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과거에는 방송이나 종이 신문은 보도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질 권리가 실현되었지만, 현재는 모든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격권 침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법률의 개정 없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터넷 시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시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2005년도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댓글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또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뒤늦게 논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여러분들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의견의 표명을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시도는 정보보호법상의 잊혀질 권리를 실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 판단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와 해당 보도내용이 인터넷에 링크나 복제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가 이를 정비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인격권이라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새로운 권리입니다. 인격권이 인정되는 경우, 물권의 방해상태를 배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인격권의 침해를 야기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상태를 지배하는 사람, 즉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트를 관리하는 서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법리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오 위원께서는 그러한 법리에 기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고 있지만, 우리 언론중재법에서는 정정·반론·추후 보도와 손해배상청구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제척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시대 변화에 따라 법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심 유죄판결 관련 기사는 명백한 사실이며 뉴스이기 때문에 삭제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2심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주석을 같이 게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포털사업자에게 수정·보완된 기사만을 검색되도록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시대 변화와 함께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해야만 그러한 실용적인 방법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근수(사회자, 중재부장)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현직 언론 종사자 중에 토론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인창(경기매일 편집국장)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인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분이 인터넷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박용상(위원장)

피해자가 기사삭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1심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취소되고 무죄판결이 났다는 내용을 원래의 기사에 첨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설명 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링크를 걸어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근수(사회자, 중재부장)

자체적으로 사내에서 기사 삭제 등과 관련하여 논의해본 경험이 있는 언론사가 있습니까. 항상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법이 따라 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언론사 스스로 내부의 매뉴얼을 만드는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하면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채(KBS 경인방송센터장)

저희 KBS는 세월호 그리고 구원과 관련하여 다량의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의 보도기준과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분들 사이에서 고민이 많고, 또 같이 고민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 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하면서 사전에 문제가 될 만한 보도기사와 화면내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그러한 사전검토도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 떠도는 화면이 워낙 많고, 그러한 화면 하나하나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결국 방송 화면 자체가 밋밋해지고 재미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 백승영(정보경영고 NIE 교사)

학교에서도 댓글로 인한 심각한 피해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이라고 악성댓글을 규정하고 학교의 선도위원회를 거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SNS에 남아 있는 악성 댓글을 삭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박용상(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는 인터넷 미디어에 의한 뉴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구제가 가능합니다. SNS에 게재된 글 등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삭제나 임시조치 같은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 이근수(사회자, 중재부장)

오랜 시간 동안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경기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